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0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7)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5)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9)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4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4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4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5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5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5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53.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5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5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6)
6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3)
6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8)
6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6)
6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0)

6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5)
6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3)
6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8)
6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8)
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8)
6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8)
7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7)
7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6)
7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5)
7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7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7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4)
7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7)
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9)
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2)
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0)
8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9)
8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0)
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6)
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4)
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38)
8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8)
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4)

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8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2)
  89.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90.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91.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92.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93.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94.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 

### 상정된 안건

|   |    |
|---|----|
|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        | 5  |
|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        | 5  |
|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        | 5  |
|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        | 5  |
|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        | 5  |
|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        | 5  |
|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        | 5  |
|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        | 5  |
| 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1) .....        | 29 |
|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       | 30 |
|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       | 30 |
|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       | 30 |
|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       | 30 |
| 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       | 30 |
|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       | 30 |
|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7) .....       | 30 |
|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5) .....       | 30 |
|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9) .....       | 30 |
|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       | 30 |
| 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 | 44 |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 강형석 차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강형석 차관입니다.

저번에도 인사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2)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3)
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8)
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4)
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7)
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9)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3)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9)

(10시13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심사 대상 법률안들은 작년에 재의요구돼서 부결된 대안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는 지금 심사 대상인 개정안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대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안 9조에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한이나 그다음에 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 재해보험 가격공시나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등이 새롭게 추가돼서 논의를 더 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지난번 회의 때 다 어느 정도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어업재해의 범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논의를 통해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농업재해 범위 중 병충해에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충해’를 포함하고 해당 병충해의 구체적 내용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구 의원님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또 고시 등에 위임해서 규정이 되고 있고, 또 여기구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일조량 부족도 자연재해의 종류에 포함되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두 번째, 6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 주기 단축 및 포함사항 추가 등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회를 통과한 대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서 윤준병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안은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을 추가하며 또 이를 상임위에 보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또 기본계획 포함사항에 산림청장이 건의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보험정책의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고, 또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같은 경우도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경우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효과는 기대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보고도 국회의 어떤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윤준병 의원님하고 문대림 의원님, 이원택·임미애·서삼석 의원님 모두 기존 대안에 포함된 내용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실태조사 대상을 농어업재해 현황으로 규정을 하고 또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옥주 의원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손해평가 결과 관련 재평가 및 이의신청 현황, 피해 원인 및 규모 등 통계자료 수집 현황 등으로 규정을 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하며 또 실태조사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다만 각각의 의원발의안에서 다소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지난번 통과된 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에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일괄해서 다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일괄해주세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속도를.

○문대림 위원 아니, 알아듣기 좋게 잘 하시는데.

○윤준병 위원 아니, 명확하게 전문위원이 수정의견 해 가지고 가부 결정했다고, 예를 들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이렇게 보완했다 이것만 얘기해 줘도 돼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두 번 심사해서 위원님들이 쟁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약간 속도를 내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1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 확대도 기존 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기존 합의사항을 그대로 견지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5.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등은 종전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농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의 범위 확대 등의 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맡기며 또 재해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 전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고 효율화를 기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재해 범위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만약 이렇게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할 경우 재해 범위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6.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제한 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취지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선택하실지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준병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금지 대상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 거대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자연재해 등을 각각 좀 다르게 규정하고 계시고 또 예외 사유로는 공통적으로 농어업인 등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런 할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윤준병 의원님은 추가로 10년 빙도 이하의 재해 피해도 같이 규정하고 계십니다. 임미애 의원님은 불가피한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할증을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여기구 의원안은 행정구역 등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정할 경우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내용에도 다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과실 여부 관계없이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러한 할증 금지조항이 도입될 경우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기본 성격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번에 재의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서 농식품부 설명을 좀 들으시고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어기구 의원안은 종전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로 하고 있어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농업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본요율을 적용받는 것을 개선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손해율이 낮은 농가 등에 대해서는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7. 손해평가인의 교육 내용 구체화 등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에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또 재배방식도 포함되고 손해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8. 손해평가 검증조사 및 재평가 시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 마련도 역시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34페이지 9.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윤준병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안은 기존 작년에 제안되었던 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에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고, 박수현 의원님 안은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보험목적물의 품목수 등 보험목적물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품목 확대 노력을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대안에 포함된 내용은 상품개발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박수현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 간 수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0.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역시 모두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11.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비율 명문화 등도 지난번에 한 번 심사하시기는 했는데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가입자 부담 보험료의 정부 지원비율을 송옥주 의원님은 80%, 어기구 의원님도 80%, 박수현 의원님 60%, 서삼석 의원님도 약간의 다른 조건을 둬서 80% 이상 의무 지원하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12.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재해보험사업 지원 및 평가업무를 전담하

는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데 개정사항 역시 논의는 하셨기는 했는데 종전 대안은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현재 이 전담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지정 절차라든지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 13.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은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장관 등이 농어업재해보험가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보험상품별, 재해보험 대상 품목별 가격 비교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농어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되기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이러한 공시체계가 운영 중이므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현행 공시체계를 활용하여 가격 공시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8페이지 14.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에는 논의가 되지 않고 이번에 새로 포함된 개정사항인데 주요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대상 미포함 작물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보다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이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입니다.

부칙은 윤준병 의원님 안과 또 다른 의원님들 안이 시행일을 약간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임법령의 준비 등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시행일을 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짧고 효과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법은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상당히 갈등이 컸었고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지금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 정부를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면 위원장님, 모든 걸 다 말씀……

○**소위원장 이원택** 예. 일괄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3페이지의 1. 농어업재해 범위 변경사항은 사실 좀 마이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의 병충해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걸 포함하는 것은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재해에다가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는 거는,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연재해에다가 일조량만 추가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자연재해로 놔두고, 저희가 지금 이미

일조량 부족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이라든지 주기 단축 및 포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윤준병·문대림·이원택·임미애 의원님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기존의 대안이 제시가 됐었고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님 등 안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되 문구를, 12페이지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제2조의3, 굵은 글씨입니다.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으로 문구를 고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사항 확대 등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윤준병·문대림·이원택·임미애 의원님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표 중간에 보시면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라고 하면 기후위기에 따른 목적물만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것이 농업인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건 좀 수정을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 등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재해보험도 있고 농촌 분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법률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재해보험은 재해보험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제한, 이 문제가 가장 의견이 컸던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원택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안에는 예외적으로 ‘농업인 등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고 입증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 이 예외조항을 삭제한다는 거는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이원택 의원님 안은 이렇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할증을 제외하는데 제외하지 않을 사람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면 농업인 등의 피해경감 노력을 안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할증을 해야 됩니다. 할증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거대재해가 온 경우에 뭐가 피해경감 노력인지 어떻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농업인들한테 크게 도움되지도 않고 갈등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 규정을 삭제해 주는 것이, 거대재해이기 때문에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예외조항 삭제하라는 겁니다.

○**정희용 위원** ‘농업인 등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을 삭제하라?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소위원장 이원택 토론은 좀 뒤로 미루시지요.

○임미애 위원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28페이지입니다.

손해평가인의 교육내용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손해평가 검증조사나 재평가 시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도 기존에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윤준병 의원님 등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노력이 있는데요, 저희들 윤준병 의원님 등 안을 수용하고요. 박수현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품목수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험목적물이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걸 해 드려야 되는 거지, 형평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준병 의원님 등 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도 윤준병·문대림·이원택·임미애 의원님 안을 수용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비율 명문화 문제인데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어업인들이 실제로 내는 보험료는 약 12.5%입니다.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80%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것이 국가로 오는, 오히려 재정 문제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업인들께 좀 적은 비용으로 가입을 하게 하고 싶지만 이 정도는 사실 전 세계 사례를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서삼석 의원님 안은 저희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규모 농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잘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80% 이상 지원을 하도록 하지만 사례를 본다면 오히려 보험 수준이라든지 좀 낮추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저희들이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서삼석 의원님 안은 수용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문금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이원택 수용 안 한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소위원장 이원택 계속하세요.

○전종덕 위원 38페이지 어느 안을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윤준병 위원 수용 안 한다는 얘기야.

○전종덕 위원 아예 안 한다고?

○임미애 위원 서삼석 의원안을 고려하면서 고민해 보겠다 이런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는……

○윤준병 위원 오늘은 수용 안 하고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43페이지, 전담기관은 지금 정책보험금융원,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송옥주 의원님께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서 지금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좀 의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가격 공시 시스템도 저희들이 지금 가격 공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이라든지 보험상품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는 상품이 같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래쪽에 보면 25조의3에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저희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운영은 이거는 사실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 대책법으로 옮겨서 거기서 조항을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행기간인데요,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1개월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거대재해라든지 어떻게 할증을 제외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빨리 하면 좋습니다마는 1년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충분하게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일괄 보고를 다 들었는데 조문별로 이렇게 쭉 하면서 의견 듣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3페이지의 농어업재해의 범위 변경안인데 정부 측은 이것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병충해도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고 일조량도 충분히 반영돼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병충해가 반영돼 있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보면 농식품부령으로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문대림 위원 그 농식품부령이 어떻게 돼 있지요? 지금까지는 농식품부령이 작동 안 했던 겁니까? 병충해는 완전히 제외됐던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병충해는 지금 재해에 포함시켜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충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잘 받아 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대림 위원** 토마토뿔나방, 이거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미 되고 있고요. 위원님, 그거 어떤 말씀이냐면 홍수가 나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험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병충해는 모든 걸 열거해 놓지 않고 그게……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토마토뿔나방 병충해 같은 경우에 신규 병충해라고 해서 계속, 3년 전에도 신규 병충해, 2년 전에도 신규 병충해, 작년에도 신규 병충해, 내년·내후년에도 계속 신규 병충해라고 해서 기준을 못 잡아 가지고 보상을 안 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병충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보상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기준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 범위는 법률이 시행령에서 고시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저는 여전히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는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다 이런 염려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토마토뿔나방은 물론 우리 기후변화 탓도 있고요 또 외국에서 비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이해합니다. 그런데 병충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 해 놓게 되면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막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충해 상황을 봐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1·2·3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 대상인지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병충해는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뿐나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제주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 제주도 얘기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에 병충해라고 법률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병충해인가는 아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필요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대응을 못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취지는 기후위기에 따라서 새로운 병충해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아니면 이 법률에다가 병충해의 종류를 다 나열을 해 버려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A, B, C, D, E, F, G를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까 결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박아야 되는데……

○**문대림 위원** 신규 병충해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수년간 반복되는 병충

해에 대해서 신규라는 이유로 약관에서 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 보험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보험약관을 앞으로 어떻게 개정하겠다 아니면 보상범위 확대 기준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위원님 그것은 다음 조문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혹시 법을 개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넣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이것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안을 수용을 하되 시행령이나 농식품부 시행규칙에 반영할 때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서 신규 발생하는 병충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원칙이랄까 이런 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방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신규 병충해에 대해서는 검토나 조사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취지가 좀 반영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면 보고를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문대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두 번째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 이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가 10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것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금주 위원** 수정의견.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정의견으로.

그다음에 14페이지, 이것도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라는 걸 좀 삭제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런데 위원장님,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부 측은 '선정 등 확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표현이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선정이라는 것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확대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정 및 확대 등' 정도 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선정 및 확대가 맞겠네요.

정부 측 괜찮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선정을 하면 당연히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 등 확대'라고 했던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선정이라는 건 빼는 것도 포함되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선정 및 확대’로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지나가고.

17페이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는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부 전체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농식품부 전체가 기후위기 대응……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외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22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문구를 약간, 예외는 삭제했는데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고 약간 고쳤습니다.

○**문금주 위원** 이걸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겠다는 건데 괜찮네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여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는 할증을 적용하겠다 이런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래서 조그마한……

○**윤준병 위원** 지금 내용은 예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고 넣고 그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앞에다 넣느냐 뒤에다 넣느냐 이 차이로 지금 하는데 뒤에다 넣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준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의 핵심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는 기준의 문제라고 하면 저는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기준의 문제라면 동의.

○**문금주 위원** 그 내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거대재해를……

○**소위원장 이원택** 거대재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거대재해인 경우에는 할증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거대재해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금주 위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어떤 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겠다는……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뭐 동의하는데, 대통령령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말하는 건데 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기준을 거대재해로 보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거대재해의 기준, 검토된 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일반적인 재해도 있고 거대재해가 있는데 어떤 걸 거대재해로 할지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다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 때 이 정도는 거대재해다 그래서 그것은 배제할 거고요. 일반적인 재해라면 당연히 할증은 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 이원택 의원님이 낸 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또는 거대재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제출한 것은 거대재해만 할증을 제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주장의 본질적인 차이는 저희는 근원적으로 할증을 배제하자는 원칙적 입장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일반재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는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일반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작년같이 폭설이 온다든지, 100년 만에 이런 게 온다든지, 아니면 30년 빈도의 폭우가 온다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재해는 시설에 따라서는 대부분 다 불가항력적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의미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배수로가 있는데 물이 넘쳐 버리면 사실 이것은 농업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재해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하나 거꾸로 반문을 해 볼게요.

그러면 100년 만의 빈도가 최근 10년간, 100년 빈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이나 해당이 됩니까, 재해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애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문안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제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동의를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것은 할증을 적용하고 어느 밖을 넘어가면 할증을 제외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걸로 하는 것이 저희 취지에 맞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원래 원문이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면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그렇게 고치면 안 되지요.

○**윤준병 위원** 좀 아닌데, 그렇게 쉽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시행령에 너무 많은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또다시 그것을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법의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거여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려면 거대재해를 정할 때는 상임위에 보고한다거나 이런 절차나마 있으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정말 문제시라면.

○**윤준병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농식품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재해보험사업자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이원택 간사안으로 돼 있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이 내용의 문구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그 내용하고 같나 다르냐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위원장 이원택** 차관님,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안을 이렇게 하니까 좀 헛갈려 버리는 데 21페이지 보면 기존 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기존에 우리가 심사해서, 왜 제 안을 기준으로 할까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자료를 다시 봤더니 기존에 우리가 협의했던 사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1·2차 심사하면서 불가항력적인 또는 거대재해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기존 대안이 우리 입장인 거지요, 그때 당시. 이것을 정부 측에서 수용을 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정희용 위원** 먼저 위원장님, 저희 국민의힘 쪽 의견 좀 들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재의요구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점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 때문에 재의요구를 했던 거고.

저희도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당시 정부의 입장은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그리고 보험상품 유지가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었습니다, 정부에서 더 먼저 반대를 했었고.

그러면 첫 번째,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규정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할증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재무건전성 악화는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증을 배제했을 때,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할증을 배제할 경우에 연간 얼마 정도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가져오는지 이 분석은 돼 있습니까, 차관님?

첫 번째,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뭐냐? 두 번째, 이 바뀐 규정을 적용했을 때 보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보험경영에 손실이 있느냐 이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로 인해 피해 입은 농민들을 돋는데 그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어민들의 마음이야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분석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손실되는 비용이 있다면 오히려 보험가입률을 더 높이는 데,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국고보조율을 더 높여서 보험을 많이 가입하게 하는 것이, 100% 다 가입하게…… 보험가입 100% 지원해 주는 비용보다 이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그것을 더 올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우리가 여기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키면 법사위 갔을 때 기재부에서 찬성 의견으로 받아 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자연재해를 다 할증을 제외한다면 보험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할인을 받아야 될 사람을 할인을 안 해 주고 기본 요율을 올린다든지 아마 보험 내에서 조정이 돼서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더……

○**정희용 위원**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증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 보험 건전성의 폭이 줄어들잖아요, 할증할 걸 안 했으니까,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할인해야 될 게 폭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인받는 분을 할인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할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안 받았는데 할인을 기준보다 덜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건 그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할증을 안 하면 또 이게 건전성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은 농림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할인받는 분들이 기준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파이가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정리하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종류. 두 번째, 할인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 할인받는

부분 재무지원이 부족하면 그건 정부에서 그러면 예산으로 빼꿔 줄 수 있느냐. 세 번째, 이분들 할증을 안 할 경우에 최소한 최근 3년간이든 5년간이든 예산이 얼마가, 할증을 면제할 경우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또 네 번째, 기재부 입장은 어떤지? 이 정도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거대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재해는 불확정 용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어디서든지 구체적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랬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재해 피해 규모라든지 정부가 너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우려가 되시면 저희가 조문에다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상임위에 보고한다든지 해서 조문을 넣어서 저희들의 재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할증을 제외했을 때 금액 총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아직 피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희용 위원** 아니, 과거 것을 적용해 봐요. 그 정도는 분석을 하고 이 법안의 논의에서 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는 농협손해보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면 자기들이 수용할 만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 금액이……

○**정희용 위원** 차관님,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데 자꾸 왜 금액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그러면 금액을……

○**정희용 위원** 그걸 알아야지 할인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험료 내는 분들, 보험가입 양이 많거나 기간이 오래된 분들한테 불안감을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윤준병 위원** 차관이 숙지도가 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예전에 이 할증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할증을 하게 되면 수지상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한 내용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권 행사의 원인으로 적시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검토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쓰자,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든지 또 빈도가 얼마 이상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에 대한 범위를 좀 구체화하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재원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정책보험이니만큼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면 정부가 수용한다고, 정책보험의 특성을 살려서 하니까 이 내용이 할증제도와 관련된, 할증제도에 현장의 민원이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제도화하자……

일단은 할증을 제외한다고 하고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포용을 하되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하면, 감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할증제도에 재해를 제도화하는 것이니까 일단 그런 내용으로 출발하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대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대안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그 정도로 출발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안 했을 때 자연재해라는 용어가, 불가항력적인 용어든 자연재해를 20년 빙도로 하든 이런 내용을 정부가 안 받아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화해서 넣기도 하고 입법 발의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20년 빙도의 내용을 자연재해로 보겠다고 이렇게 입법안 했고 또 아마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불가항력적인 용어 이런 내용으로 넣어서 자연재해의 포괄성을 줄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입법한 내용에서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용어의 불확실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피해로 해서 그 내용을 한정할 수 있도록 입법안에 들어 있어서 그 정도 내용이면 일단 제도적으로, 원칙적으로 할증을 제외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할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운영하는 내용은 시행령이나 이쪽 단계에서 갈 텐데 그 내용이 미심쩍으면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규제될 수 있도록 또 받겠다고 그래서 그 정도 틀로 일단 만들어 놓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잠깐만요.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정말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농어업재해보험에 누적손해율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여태까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은 99%, 100%.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예측 불가하고 거대한 자연재해 이것은 아까 정희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강명구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 할증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돈도 올라갈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떤 피해를 농업인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준도 없이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까지 다 그냥 곧 통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나라 살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추계, 앞으로의 재정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계획하고 보지 않고 이 법을 통과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희들이 1년에 보험료 지원하는 게 올해는 한 4500억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0%를 지자체라든지 내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료 많이 올라간다 그래도 저희 예산이 올해 18조 7000억이고 추경까지 합치면 19조입니다. 충분히 감

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앞으로 저희 예산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정도 하게 되면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용 위원 차관님,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마는 큰 부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전종덕 위원 저도……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진행을 위해서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 발언하고 이 항목은……

○문금주 위원 이렇게……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요. 이 항목은 다른 것 다 심사 끝내 놓고 마지막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

○문금주 위원 차관님, 저는 전체적으로 윤준병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희용 간사님 말씀 주신 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또 해 봐야 되니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하고 상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것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 해 놓고 하면서 시행령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그랬다고 해 봐, 그때 다 반대하셨겠지.

○문대림 위원 사실 예민한 사항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농업을 바라보는 농청 철학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고 봐지고요. 불가항력적인 재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책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재무적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식량 안보적 관점에서 농업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에서의 문제도, 저는 지금까지……

아까 누적손해율이 거의 없는 형국 아닙니까? 이렇게 할증을 배제한다고 해서 누적손해율이 그렇게 높아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과감하게 이것은 국가책임제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 설정 과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농림부 입장이 어쨌든 대통령령의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국회 보고에 관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대림 위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과감하게 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짧게……

○전종덕 위원 저 계속 손 들었는데……

○정희용 위원 제가 짧게 먼저……

전종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전종덕 위원 저 먼저 할까요, 발언하셨으니까?

앞에서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하고요. 물론 기준이나 재정 여건도 생각을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고.

자연재해가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마다 할증까지 붙으면 이후까지 계속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농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에서 입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농림부에서 제출하신 대안은 거대재해만을 전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재해가 큰 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불가항력 재해는 작은 재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할증을 폐지하고 할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보험 자체로는 자연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농업재해보상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까 재해 국가책임 얘기하셨는데 향후에는 자연재해에 대해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재해보상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하고 정희용 위원님 듣고 이 항목은 마지막에 토론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나머지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해는 이제 앞으로 수시로 일어날 거고 규모는 굉장히 거대해질 겁니다. 재해의 상시화·거대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농정의 큰 기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농정 당국이 전제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농촌 현장에 있지만 상시적으로 대규모의 재해를 입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들도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재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그러면서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봐도 ‘여기는 그 농사 지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곳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사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허가 내고 그곳에 농사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재해 입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농업 정책에서 특히 재해와 관련돼서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도 우려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는 수시로 일어날 거고 규모는 커질 텐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법안 논의를 하고 있다면 그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농정 당국은 상시화·거대화되는 재해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난 그 지점과 작목에 대해서 면밀한 자료 조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노력들을 정부 당국이 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곳에 그 농사 짓지 말게 해야 되고 보험 들지 말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법은 통과가 되었을 때 오히려 어쩌면 많은 농민들이 걱정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위원님.

○ 정희용 위원 앞선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여야 위원님 간에 또 여야와 정부 간에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정부는 또 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러면서 평행선을 달리기보다 오늘처럼 좀 더 중간적으로 수정안이 나와서 논의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진작에 통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의무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또 도시에서의 재난과 재해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비용추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최대한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이 표현을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출발해야 된다, 법을 개정할 때는. 그래서 시행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빨리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다시 논의를 하실 때는…… 그냥 파격적으로 이렇게 막 했다, 이게 저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이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임미애 위원 참고로 혹시 재해지도, 최근 한 5년 혹은 10년 동안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 냉해 피해 있었던 곳도 있을 것이고 서리나 우박 피해가 있었던 곳도 있고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했던 곳이나 이런 재해지도가 있나요?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장 정재원 재해보험정책과장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량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냉해지도라든지 태풍지도라든지 이런 부분 농업재해에 특화된 지도는 없어서 이 부분도 이번에 국가책임제 이런 공약을 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임미애 위원 이것 재해지도 만드셔야 됩니다. 최근에 냉해가 발생하는 경향은, 과거에는 평지는 과수농사 짓기 좋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평지가 냉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오히려 산간지가 냉해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의 변화를 좀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최근 5년 혹은 10년 동안에 농촌지역에서 발생했던 재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저희들도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은 마지막에 쟁점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은 있는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손해평가 검증조사 및 재평가 시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수용 근거인데 수용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문금주 위원** 28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아, 28페이지 안 했나요?

○**문대림 위원** 예, 7번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손해평가인의 교육내용 구체화 이것도 특별하게 이견 없으시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4페이지,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 이것도 박수현 의원님은 취지가 같이 재해를 봤는데 임산물은 보험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같은 비닐하우스 안에 임산물이고 하나는 농작물인데. 그런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보험상품 개발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36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8페이지, 보험료 의무 지원비율 명문화인데 80%,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일단 현행을 존중하는 형태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행을 유지하는 형태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수용이지요.

그다음에 43페이지,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은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빼는 걸로 하겠고요.

46페이지, 가격 공시 시스템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46페이지의 아래쪽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대안을 제시해서 수용하되 수정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그러면 수정안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8페이지,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문금주 위원** 이것은 재해대책법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재해대책법 소관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6개월, 1년?

○**문금주 위원** 1년 합시다.

○**임미애 위원** 준비하는 데 1년이 필요하다니까 1년 해 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1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안으로 돌아와서 차관님,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추가부담금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아까 일반재해와 거대재해 또는 불가항력 재해의 기준이잖아요. 사실 지금 일반재해도 면적으로 구분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선 시군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50ha 기준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는 비가 온다 그러면 50ha 기준이고요.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행안부가 담당하면 또 다를 수가 있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금액으로 나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은 50ha고 시군이 걸쳐 있으면 또 기준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이 20년 빙도…… 빙도수로 따지면 50ha 기준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연재해가 사실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일반재해냐 거대재해냐를 떠나서 사실 자연재해 자체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할증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두 번째는, 아까 재정 부담과 관련된 건데 농업에서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지금 사실 농업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된 950만 원이지요, 작년이? 이렇게 열악한 농민들의 삶의 조건에서, 예를 든다면 국가가 재해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조고 또 농업소득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조건하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농업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업 전체 다 털어 봤자 18조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전체의 2.7%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20년에 할증 총액이 얼마지요? 79억이었던가요?

제가 할증액 자료를 한번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4년에 할증액이 327억, 23년에 324억 그다음에 22년에 307억, 21년에 239억, 20년에는 79억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할증액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평균적으로 1년에 256억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256억 정도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국가재정에…… 국가책임제 한다는데 정부가

이것 받아야지요. 저는 1000억·2000억·몇천억대인지 했는데, 재정 부담이 얼마나 정도 되는가는 작년·재작년·재재작년의 할증료만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할증료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250억 정도인데……

그리고 보험상품 자체가 적자가 났을 때도 있지만 지금 흑자도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보면 거의 적자·흑자 없이……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맞잖아요. 수지가 맞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임미애 위원** 원래 보험이 그렇게 맞춰서 설계됐으니 맞춰야 정상인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할증료 부분이, 한 250억 정도가 재정 부담이 크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원래 장관님께서 경감조치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거대재해의 기준인데 그것 저는…… 그러면 거대재해 기준을 50㏊가 아니라 100㏊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평균 250억 정도의 할증료인데……

정부 측에서 가져온 안은 이런 것 아닙니까? 원래 정부 대안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자연재해일 경우는 좀 경감조치하고 거대재해일 경우에는 할증을 면제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조정안은 없습니까?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은 없었어요. 면제한다는 내용을……

○**소위원장 이원택**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해에 대해서는 경감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 내용까진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 시행령 만들 때 고려할 수 있겠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재해도 수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차관님. 250억이잖아요.

○**문대림 위원** 후딱후딱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희용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금주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할증을 없애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 주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보험 설계를 손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보험사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정부가 250억 부담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보험상품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지요, 이제.

○**정희용 위원** 그렇지. 하려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문금주 위원** 그렇지.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면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그것을 커버해 버릴 수가 있다고, 정부에서 보전 안 해 줘 버리니까.

○**정희용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납부 잘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문금주 위원** 그렇지.

○**정희용 위원** 그래서 제가 제한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종덕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금원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잖아요, 보험이나 이런 것을. 그리고 농협에 농협보험 이런 거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차관님,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또 다른 법안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50억 정도 재정 부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담당 국장님아랑 계실 것 같은데 이것 다른 법안심사 끝날 때까지 답변을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아니, 지금 결정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재의요구가 될 때는 모든 재해를 적용하는 거였다가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3월부터 쭉 발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불가항력적’ 이런 단서들을 추가해서 수정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어느 기준을 초과하는 재해를 면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다가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정부 대안으로 가지고 온 것 해도 저희가 시행령 논의할 때 의견을 반영하면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데 정부가 아까 불가항력적 재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불가항력적 재해 기준을 일반재해는 제외시켜 버리면 일반재해를 받는 것에도 할증료가 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그 건수라든지……

○**윤준병 위원** 간사님 얘기는 ‘불가항력적인’ 이 내용을 빼 버리자 이런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지요. 저는 일반재해로 가자는 거지요, 원래 자연재해가 불가항력적인 재해니까.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만 빼면 수용이 가능하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지요.

○**윤준병 위원** 나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사실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할 때 큰 재해인지 작은 재해인지 하지 않습니다. 몇 번 발생했는지 얼마인지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 용어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것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 검토해서……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그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 내용 가지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앞에 굳이 불가항력적 이렇게 하는 내용을 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니까 그 내용 판단하기 전까지 정리해서 이후에 판단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빼면 모든 재해에 적용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자연재해에 해당되지요.

○정희용 위원 모든 재해에 규모와 상관없이……

○윤준병 위원 자연재해, 자연재해.

○문금주 위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안에서.

○소위원장 이원택 자연재해지요, 농작물의 자연재해.

○윤준병 위원 그런데 그 피해가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 하면 모든 재해가 50ha 기준이라고.

○정희용 위원 그러면 과거의 재의요구된 법안하고 차이는 ‘모든 자연재해에서’ 그것은 같고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그 제한이 붙은 거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예.

○정희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 보자. 그런데 자연재해는 다 불가항력적이라니깐 ‘불가항력적’은 들어내자.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동어 반복이니까 굳이 앞에 일반재해, 불가항력적…… 용어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그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불가항력적인 재해가 자연재해라는 내용에 포함되니 그 내용은 빼고 뒤의 내용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시행하자는 거지요.

○정희용 위원 그런데 이원택 위원장님 말씀은 모든 재해 그리고 큰 재해 이렇게……

○윤준병 위원 아니,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지요, 모든 재해가 아니고.

○소위원장 이원택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재해로 지정돼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듣다면 지금도 재해 면적이 50ha 이상이 돼야 돼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모든 재해가 아니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다 이 내용으로 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더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넣어서, 좀 포함해서 시행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시행해 보자는 내용이니까 나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재정 부담이 250억이잖아요. 몇 천억도 아니고 250억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법안심사 마지막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정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불가항력적인’ 그 단어만 빼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빼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차피 자연재해가 다 불가항력적……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문장의 단어를 빼는 것도 중요한데 본질은 핵심은 자연재해에 대한 할증을 예를 든다면 작은 재해든 큰 재해든 어떤 큰 재해, 중규모 재해는 제외하고 작은 재해는 적용한다 이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문제예요.

○문금주 위원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지금까지 할증료가 평균 250억 정도였으니까……

그 부분은 마지막에 심사를 하지요, 정부 측도 의견을 좀 가져오시고.

○**윤준병 위원** 의견을 빼는 내용 가지고 줘야 돼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요. 불가항력적은 빼는 걸로 하고.

○**윤준병 위원** 불가항력적을 빼는 내용을 수용할 거냐 이것만 판단해서 정하자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 중의 하나, 이건 자연재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경북 같은 경우에 발생한 복합재난의 경우 여러 시군에 걸쳐서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자연재난 아냐?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어야지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 그다음에 자연재난, 뭐 이런 식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를 든다면 농식품부는 50㏊ 기준이거든요, 농작물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시군에 걸쳐서 50㏊ 이상이면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재난지역은 좀 더 큰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특정 농작물에 대해서.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해지역의…… 우리나라 법에는 원인을 따져서 사회, 자연 이렇게 나누어서 재해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해당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면적은 넓어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산불을 자연재해로 바꾸자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나가야지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임미애 위원** 그러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나 할 중이 제외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재해로 인정되면…… 경북 같은 경우는 산불을 복합재난으로 해서 자연재해의 성격을 인정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피해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자연재해로 저는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다는 거지요.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여기 문구 조정할 때 ‘등’자를 하나 넣는 게 안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임미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험 할 때 산불은 포함이 되는데 자연재해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재해 등’으로 하면 산불도 포함되고 하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등’자를 하나……

○**임미애 위원** ‘등’자를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또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마지막에 결정하겠습니다.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5)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0)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6)
1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1)
1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6)
1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6)
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7)
1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5)
1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9)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4)

(11시34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9항부터 19항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자료 2페이지에 11건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안과 동일한 윤준병·문대림·이원택·임미애·서영교 의원안의 내용을 정리했고 음영 표시 부분은 대안과 약간 다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페이지 1. 조문별 검토에 농업재해의 정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 이상고온, 산불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는 병해충 등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고 또 일부 의원안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의 경우에 한정해서 일조량 부족이나 이상저온 등의 문제를 포함시키는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지진이나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 추가는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3번 산불로 인한 피해 추가는 아까 위원님들이 논의하셨으나 사회재난에 해당되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해충의 범위 확대도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광범위한 피해’와 같은 요건 등이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법 적용 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도 윤준병 의원님 안 등이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입법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농식품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3.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지난

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26페이지에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재해 발생 긴급 실태조사에 관한 경우도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서삼석 의원님 안은 이에 추가해서 재해 발생 피해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안에는 윤준병 의원님 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또 서삼석 의원님 안의 경우 원인조사가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5.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관련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41페이지 6. 생산비 및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보조와 지원 부분도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히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8페이지에 대안이 제시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7. 특별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새로 제안하신 내용으로서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피해 규모가 심각해서 복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거대재해 발생 시에 특별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62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64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에 한정하지 않고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규율력이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위원 구성에 농림축산업인단체나 어업인단체 대표를 추가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회에 추가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71페이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전문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중복을 최대한 방지하고 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또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74페이지 10.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은 대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응급조치 및 응급대책에 응해서 지원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마련도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별 피해 원인 및 발생 지역 또 보상 규모, 복구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만 현재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12.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도 지난번 대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관해서는 ‘6개월’ 또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까마는 아까 재해보험법과 마찬가지로 하위법령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재해대책법 3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윤준병 의원님 안 등에 대해서는 지진을 농업재해 대상으로 넣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이상고온이나 이상저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재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재해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이상고온을 뺀다고요?

○윤준병 위원 빼는 게 아니고 저 뒤로 뺐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심의위원회에서.

10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대안이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몇 페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농업재해에는 지진이 포함되고요.

그다음 문구가 뭐냐 하면 ‘이상고온,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해에 직접 넣는 것은 지진만 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몇 페이지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장 정재원 8·9페이지의 윤준병·문대림·박상웅·임미애 의원안을 받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 안에는 이상고온이 들어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넣어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연관성 때문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진은 나면 어차피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이상고온·이상저온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정희용 위원 이게 제5조제1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대상이 된다 이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건 당연한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안을 토대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원하시는 그런 문구들은 다 넣었고 단지 발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20페이지 3. 생산비 보장 또는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부분 의원님들 발의한 안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경영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및 경영안정’, 경영안정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넓혔고요. 생산비 보장은 좀 구체화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재해 이전까지의 생산비를 보장한다고 해서 문구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 ‘기후변화 대응’ 같은 용어를 쓰게 되면 거기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서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재해 예방 및 대책의 범위를 넓혔고요.

다만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지원은 사실 이게 원칙에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목적물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구를 정리했고요. 그게 26페이지에 정부 대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9호 말하는 거지요?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리를 해서 그렇게 문구를 다듬었고요. 이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좀 넓혀서 대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긴급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긴급’ 자를 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35페이지에 있는 윤준병 의원님 등 대안에다가 ‘긴급’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특별재난지역 할 때 농업에 대한 어떤 손실이 포함되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넣어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난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이 법에 넣는 것도 맞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생산비 및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보조와 지원도 45페이지에 저희들 대안이 있는데 주 내용은 그겁니다.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이렇게 구체화시킨, 의원님들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 저희들 제안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 농가에다가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목적물 여부인지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서 보험과 상충되지 않도록 문구를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취지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특별재해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임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데 저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행안부가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중복이고 하나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의 대표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있는 심의사항은 이미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올려도 되지만 법체계상 시행령으로 놔두는 게 저희는 낫다는 생각을 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기후위기 전문위원회 설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보다는 농식품부 전체 어디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5페이지에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은 저희들이 이것도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7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지만 의원님들 말씀 그대로 받아서, 다만 용어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마련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해 드렸고요.

84페이지 보시면 두 항을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고 해서 두 문구를 하나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인데요.

아까 재해보험법과 마찬가지로 1년 정도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조문별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대림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안 하셔야 빨리 할 수 있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아까 그 자연재해는……

○**윤준병 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부안에 100% 동의.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간사님한테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특별하게 의견이 없는 거잖아요? 다만 이상고온·이상저온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조문에는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1페이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이것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페이지,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 또는 지원 근거 마련 이것도 다른 의견 없으시고, 7호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의견 빼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빼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넣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다른 의견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긴급’ 자 빼 달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7페이지,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이것은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지정을 하니까 별도로 여기에 둘 필요 없다 이런 취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요.

41페이지, 생산비 및 실거래가 등을 고려한 보조와 지원 이것도 특별하게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대로 의원안을 받았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차관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거에 재의요구 될 때

이 조항이 문제가 돼서 재의요구가 됐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때 재의요구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재해지원 내용의 ‘응급 복구’, ‘생계 안정’이 부분과 상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우려점 때문에 재의요구가 됐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재해보험과 역할이 중복된다고 우려를 표시했고 행안부에서도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저하시키고 복구 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법 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재의요구 사유가 됐던 두 가지 부분, 지금 타 부처가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이 법안 내용대로 했을 때 2024년·2023년·2022년 과거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일단 죄송하게도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 안 해봤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의요구 했던 사항이 경영 안정이랑 중복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료대금과 같이 생산에 들었던 비용, 그러니까 경영과 관계없이 생산에 들어서 없어진 비용을 하기 때문에 경영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경영에 충분할 정도로 돈을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생산에 드는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큰 고민, 문제는 없고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 유인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목적물인지 아닌지, 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서 보험목적물이 아니면 약간 높은 보상을 해 줘도 되고요.

○**강명구 위원** 어떻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보험목적물이 아니면 약간 생산비를 좀 더 드려도 되고, 왜냐하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목적물이면 농업인들이 돈은 들지만 보험을 가입해서 피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좀 낮추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그때는 또 좀 적게 드리고 해서 이 재해대책하고 보험이 상충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강명구 위원**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전체적으로 54% 됩니다.

○**강명구 위원** 54%인데 생산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가입하려고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전부하고 일부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수확물을 보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확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를 보전해 줘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전 방식 같은 경우에도 보험하고는 상충되지 않게 그렇게 금

액을 정해서 보전을 해 드리면 그렇게 상충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희용 위원 차관님,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보장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을 통해서 보험 유인을 저해시키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면 보험 가입을 한 분들한테는 더 두터워야 되고 안 했으면, 보험 가입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생산비 보장에 대해서 비율을 약간 달리 적용해야 보험 가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보험 가입한 분들은 적게 보상하고 보험 가입 안 한 분들은 다 해 준다,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스스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약간을 드려도 괜찮고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그걸 훨씬 많이 줘 버리면 보험을 가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적게 줘서 ‘최소한 국가가 이 정도 책임은 져야겠다. 그런데 농업인은 그 이상은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강명구 위원 아까 거꾸로 설명하셨어요.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이고, 지금 기재부하고 행안부 입장하고 비용추계 안 된 것하고 세 가지 추가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건 사실 기획재정부랑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들이 비용 추계는 사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보험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행안부 입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정희용 위원 그러면 적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보험 가입 유도를 하겠다, 이걸 해 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듣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내용은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재부에서도 저희가 보험목적물 여부라든지 이걸 조건을 달면 수용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사실 내용은 예전에 크게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하고 관계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이고 그다음에 재해보험법이 선택적 안전망인데, 재해대책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 안전망에 상응하는 법체계를 만들려고 의원들은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내용이 보험법을 기본 안전망으로 놓고 재해대책법은 재해 기본법의 하부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법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재해대책법이 기본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틀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 그러려고 보면 현재 주어져 있는 내용 중에 재기가 가능한 수준의 실제 보상체계 이게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해 기본법의 원칙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 기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사실은 정부가 재의요구하면서 조금 과잉해서 대응했던 부분이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수용해서 담아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 협의는 다 됐을 건데 다만 비용추계와 관련된 내용상에 보면 우리가 재난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보면 정부가 재정적인 기준하에 판단해서 재량적인 내용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재난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는 기본 안전망을 만드는 재해대책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은 여기 법 취지에 담았고 그 내용을 정부가 이번에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당초 우리가 원하는 내용대로 기본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입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농식품부가 수용해 준 내용들이 진일보한 내용이어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꾸 비용추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비용이 들 거면 재해보험의 국고보조 비율을, 지방도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국고보조 비율을 90%로 높여서 최대한 보험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막 복잡하게 안 해도 보험 가입도 많이 유도해서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 분산해 가지고 하고 재해보험의 국고보조 비율을 높이는 건 또 반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저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보험은 주로 큰 농가가 가입합니다, 규모가 되는 농가들. 그런데 사실 소규모 농가들은 보험 가입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재해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최소한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이게 있더라도 대농가는 분명히 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 재해대책법에 대한 기본 관점의 변화하고 예산의 실제 추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서 생계 구호, 복구 차원에서 어떤 접근이었다면 사실 농작물은 농민의 전체 소득의 전부잖아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집이 좀 파손됐다든가 이런 건 복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1년 소득의 전부가 농작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재난 직전에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해야 된다, 아니면 농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 구호나 복구 수준이 아니라 농민들이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관점으로 재해대책법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게 관점의 문제고요.

사실 지금 생계 구호나 복구 수준이라 하더라도 대파대네, 농약대네, 계속 올려 왔잖아요. 액수는 실제로는 계속 상향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올해 경북 사례가 다르고 작년 사례 다르고 또 재작년 사례 다르잖아요. 산사태 사례 다르고, 올해 경북 사례는 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잖아요. 실제 비용추계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재해대책법의 기본 관점이나 원칙을 바꾸는 문제 하나가, 농작물에 한해서는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농민 소득의 전체니까. 이런 개념을 좀 받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재정추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반영할 건지 설계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핵심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재정소요, 비용추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다. 현행 범주 안에서도 될 거고, 아닐 거다.

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법안의 취지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선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 거고 시행령에 결국 담겨야 되니까 시행령을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조항은 지나가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시행령에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여기?

○**소위원장 이원택**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정희용 위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래 놨으니까 그 달리 정하는 게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한다 이런 식인가 보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60이요? 이건 삭제하는 걸로 얘기된 거지요? 60페이지 특별재해복구비 지원 삭제.

62페이지 심의위원회 구성 이것도 양해 요청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다음에 71페이지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도 동일하고요. 삭제하는 걸로 하겠고.

응급조치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건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응급수송 및 그 밖의 지원 요구로’ 이렇게 바뀌는 걸로 가겠고요.

78페이지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하고 있으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있으면, 큰 지장 없으면 법에다 넣으면 확실하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넣어도 되는데요 위원님,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어 가지고 이걸 또 넣어 놓으면 하나는 못 씁니다.

○윤준병 위원 그쪽하고 중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넣어 봐야……

○윤준병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삭제로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안내 의무화 이건 문장 조금 조정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칙은 6개월 아니면 1년? 1년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1년.

○소위원장 이원택 1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조정한 내용 중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순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좀 앞에 나와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 순번 정할 때 그걸 2조의2로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2조의3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말씀 맞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순서 바꾸는 걸로.

지금 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 심사를 마쳤고요.

차관님,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아까 재해보험법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할증과 관련된 것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금 세 번째 심사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인데 이게 타 상임위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됐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여기서도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된다는 의견이어서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팬참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용 간사님께서 강명구 위원님이랑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하고 재해보험법인데요. 재해대책법은 이견이 없잖아요, 일단. 재해대

책법 처리하고 재해보험법 정부 측 의견 확인하고 처리하고 그다음에 고용인력 관련된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아까 재해보험법 관련해서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인’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는 크게 보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큰 거대재해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좀 기준을 다시 정하려 그립니다. 피해 50㏊, 100억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예를 들면 피해율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할증을 제외하는 그런……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문장을 좀 천천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이 ‘등’이 들어간 이유는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불입니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날 새야 될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모든 자연재해를 다 하게 해 버리면 사실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원칙 이런 걸 볼 때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또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저는 그 문언에는 동의할 수 있는데 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어떤 설계를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 의지가, 이거 250억이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측 의지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의지가 많아 가지고 지금 다 수용을 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그것 한마디……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강 차관님, 예전에 장관께서도 이 할증 제외에 대한 내용을 소위 보험 자체의, 정책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에 조금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할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문구는 만들되 250억 정도의 재정 투자를 더 해

서라도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겠다, 국가 책임을 들려 가겠다, 이런 의지가 앞으로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확실히 여기서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행령 만들 때는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까지 수용을 했는데 저희가 꼼수를 부릴 이유는 없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의지 표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것 시행령에 너무 위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법의 효과가, 개정 효과가 저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가지고……

○**임미애 위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용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다 통과됐지, 옛날에.

○**전종덕 위원** 다 시행령에 위임해 버리면 쟁점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진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위원님들, 그러니까……

○**전종덕 위원** 뭔가 법으로 해야 된다는, ‘할증해야 된다’를 명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참 저도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그 시행령 초안이 작성되면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법안소위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전체회의 있으면 위원님들 다 오시는 거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제가 법안소위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을 보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만약에 시행령이 너무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준병 위원** 그러면 법을 또 개정해야지.

○**정희용 위원** 개정안을 내세요, 전종덕 위원님이.

○**전종덕 위원** 그래서 이왕 법을 만들 때……

○**임미애 위원** 아니지, 시행령의 범위를 넓히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전종덕 위원** 시행령은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윤준병 위원** 뭐 그 내용 가지고…… 행정입법도 보고받아요, 우리가.

○**임미애 위원** 우리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으니까……

○**전종덕 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일단 이 재해보험법의 할증과 관련된 취지나 뜻을 정부 측이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령을 잡아 줄 것을 촉구드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전체회의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법안소위 위원님들께는 개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사실 이것을 끝까지 버티고 싶은데 우리 정희용 간사께서 윤준병 의원님 안을 자

꾸 채택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 측의 의지나 취지를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만약에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약속이고 또 지켜 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추가 입법을 하든 추가 행동을 하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저도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농산물보험제도의 할증과 관련된, 납입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는 보험의 혜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 간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는 민원들도 한번 확인해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농민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라는 내용으로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용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정희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정희용 위원** 아직까지 전체회의가 남았습니다마는 농림법안소위에서 과거에 재의 요구가 됐던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이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여전히 재정추계가 부족했던 문제 그리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의 문제 또 보험가입하신 분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되는 문제 또 보험 재정수지의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화·대형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농민들, 농어민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수정된 안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으면 좀 더 빨리 우리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시 전면 할증 적용 배제, 생산비 전액 보장이라는 합의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도 있었다는 아쉬움을 기록에 남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오늘 여야 합의로 우리 농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한 또 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본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선택 안전망을 뒷받침하는 농어업재해

보험법이 이렇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특히 야당의 정희용 간사님 또 강명구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통과됐지만 만시지탄도 있고 그동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출범한 만큼 이런 입법 내용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특히 시행령 과정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잘 이행돼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탈출하고 또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서 농업이 제대로 지속 가능하고 또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 2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0)

(12시38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절적 수요가 있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해외 입국 외국인 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무부 내부지침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또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문을 참조해서 입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런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규정이 계절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근로자 모집·체류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 제도가 법무부 지침과 또 지자체의 MOU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무 부처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이 개정안과 함께 발의돼서 지난 7월 3일 날 본 회의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인력도입 방식도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MOU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5페이지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니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업·어업경영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다만 16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이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사업장’을 ‘농어업 분야 사업장’으로 수정하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2.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는 기본계획에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19페이지의 검토의견에서 보시다시피 ‘인권침해 구제’라는 표현이 약간 사후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인권보호’로 수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나.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다만 조문의 간결성을 위해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등 업무 지원에 관한 내용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또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를 총량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외국인 및 이민 분야 최상위 심의기구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4페이지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규정에 관한 내용 중 내국인 구인 노력에 관한 내용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 보장을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가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또 정부가 내국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개별 농가에서 구인 노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에 계절근로제의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지난 7월 3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체류 등에 관한 사항이 법무부의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통해서 하고 있으므로 중복 규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에 관한 내용은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또 한국어 활용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내국인 구인 신청 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농어업경영체가 외국인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적격자를 추천해서 근로허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구직자 명부의 작성 및 구직자 명부 중 적격자 추천 등 모집 과정을 지자체별 MOU에서 농림부 또 해수부와 송출국 정부 간 협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전에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자체 간 MOU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다. 근로계약, 계절근로기간 연장, 재입국 추천 및 근무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표준 계절 근로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한편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연장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등이 재입국 후 근로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 1개월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등이 근로조건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근무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개정안같이 체류기간을 정하지 않고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고용허가제보다 좀 더 간소한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 체류할 소지가 있고 또 다른 외국인 출입관리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전문위원님, 내용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임미애 위원** 검토의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 법안에 수정이 있으면 수정, 아니면 이 법안은 삭제면 삭제 이렇게..... 내용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돼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처음 보시는 내용이라 좀 했는데 그러면 내용 설명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라. 보증보험 등의 가입 및 귀국에 필요한 조치는 여기 개정안에 담고 있는 세 가지 보험 중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상해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지금도 가입이 가능하고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보험료 또는 신탁금의 납부도 계절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51페이지의 수정의견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다른 법률의 준용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러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들은 현재 법무부 지침으로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특히 다른 것보다도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계절근로자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준용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4페이지 이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은 여러 개의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51페이지의 수정의견처럼 한 조항으로 묶어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자업장의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마는 다만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그 요건을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침의적 행정행위인 지정취소의 경우 법률에서 직접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청문을 필요적 절차로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6.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일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의 별칙 규정은 개정안 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칙 규정과 양별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적절합니다만 62페이지의 표에서 보듯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이미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중복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도 개정안에 대한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례가 필요한 게 일부 있어서 부칙에 이 적용례 부분을 추가하면 될 것 같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전에 전종덕 위원님 의견 먼저 듣고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구제라든지 권리 보호 이런 개선의 내용을 담은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내국인 구인 노력’ 그 조항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지금 현행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내국인 고용의 노력을 1주 이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일자리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런 노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명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 10조, 다 신설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10조의5 3항에 보면 농어업

경영체, 사용주지요. 사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이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 또한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줘야 하고 월 1회 이상 통장에 직접 지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급이 됐는지를 자체가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삼자가 이것을 갈취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제할 경우에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자들한테 직접 제공돼야 될 부분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조의6(계절근로기간 연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법무부 지침에는 근로계약을 개선할 시 8개월 이내에 잔여기간 안에서 연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제한이 열려 있어 가지고 이것 또한 장기체류의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계약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법의 취지가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고용 그다음에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니만큼 이런 것이 악용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토론은 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1. 정의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하셔 가지고 제가 별도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18페이지의 기본계획에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포함이 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인권보호로 바꾸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내용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6호가 5호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삭제요? 삭제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 협행과 같은 걸로 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업무도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농어업고용인력은 계절근로자를 다 포함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고치는 것하고 그리고 교육이나 정보 제공은 협행법에 있습니다만 혹시 꼭 넣으셔야 된다면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제공의 내용이 의원님이 의도하신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설치도 사실 전문위원 검토하신 대로 지금 배정심사협의회라든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있어 중복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절차 규정에서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맞습니다. 지

자체가 구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농가에서 부담한다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다가 의무를 좀 더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농가에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어를 고치지 않는다면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허가도 전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것하고 법무부에서 만든 계절근로자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반대되는 것을 하기가 힘들어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근로계약, 계절근로기간 연장, 출입국 추천 및 근무처 변경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 그 지침이 있는데 10조의5 1항이나 2항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만 나머지 근로계약 개선이라든지 근로기간 연장 이런 것들은, 아까 전종덕 위원님께서 8개월 문제도 제기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지침에 따라서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처 변경은 법무부 소관이라 저희들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 및 귀국에 필요한 조치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일반 법과 맞지 않거나 규정이 미비한 것들은 저희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은 의견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의 준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의원님 취지는 그대로 수용하되 아까 말씀드린 타 법과 상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고요. 나머지 차별 금지라든지 기숙사 제공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이랑 똑같습니다.

53페이지 공공형 계절근로자업장의 지정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사업장을 운영 기관으로 해서 기관 개념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을 했고요.

58페이지입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도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데 다만 대통령령과 조례가 좀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약간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별칙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은 1년이 여기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조제2항에 보면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는, 사실 저희들이 이게 도입과 관련한 것이라서 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안 했기 때문에 별칙 규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64페이지 부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저희들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다른 의견이…… 조문 순서대로 가면서 의견을 받을까요? 그게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임미애 위원 제가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임미애 위원 이야기가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서 부처의 입장을 수용하지만 그래도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장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법무부하고 지자체 그리고 농림부·해수부가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요.

예를 들면 근무처 변경 관련해서도 계절근로자가 일하다가 부당 처우 등의 행위가 발생해서 사용자한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신청해서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공평하지 않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 등에 근무처 변경 업무 맡아 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건데 이것을 또 그냥 넘어가면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이 법이 보완해 내는 데 아무런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서 많은 부분 역할이 넘어가 있어서 일부 농림부에서 주는 의견을 저는 수용할 의사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법무부하고 지자체하고 좀 신속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협의해서 혹시 법 개정할 게 있다면 하고 지침이라든지 개정할 게 있으면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연금 같은, 4대보험을 다 들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연금하고 고용보험하고. 실제로 8개월을 일하다가 가는 사람들의 경우 8개월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얘기들이 작년 국감에서부터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법상의 어떤 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쪽에서 낸 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있었던 모국에서 냈던 연금이 타국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연금을 냈을 때 이것이 국가 간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내는 것도 괜찮지만 국가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당한 연금 요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조문 심사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윤준병 위원 예, 빨리 가십시오.

○소위원장 이원택 15페이지, 계절근로자의 정의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이나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8페이지, 기본계획에서 구제라기보다는 인권보호라는 표현으로 동의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실태조사에 인권보호를 집어넣는 것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4페이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하는 것……

그다음에 28페이지는……

저희 28페이지가 맞지요?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혹시 건너뛴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삭제 요청인데……

○임미애 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윤준병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4페이지도, 이것도 삭제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7페이지도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1페이지인가요?

○임미애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일부는 수용하고……

○윤준병 위원 어떤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10조의5는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좀 구체적으로…… 10조의5, 10조의6, 10조의7, 10조의9, 이 내용만 수용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 내용은 수용하는 것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조문 순서는 좀 조정하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10조의5 중에……

○윤준병 위원 5·6·7·8 이렇게, 8이 빠지는 거구먼.

○소위원장 이원택 6·7·9는 삭제하고, 그러지요? 10조의6·7·9는 삭제하자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 43쪽에 지금 수정 개정안 내놓은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10조의6하고 10조의7은 삭제를 하고요. 10조의5(근로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고 하는 것 이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지자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잠깐, 헛갈리니까…… 근로계약 10조의5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 근로계약 체결 업무를 시군구에 대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동의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것은 동의하고 3항을 삭제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1페이지를……

○**소위원장 이원택** 5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51페이지 내용 어때요?

○**임미애 위원** 예, 이것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임미애 위원** 저희가 대한변협하고 같이 준비했는데요. 대한변협에서도 저희가 의견 회람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51페이지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53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것은 수정의견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수정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이것도 수정의견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별칙, 61페이지.

별칙에서 25조 1항 1호하고 그다음에 2항 2호를 제외하면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두 가지 제외하겠습니다. 자구 정리는 맡겨 주시고요.

부칙에서, 1년인데 이 1년 너무 길지 않나요, 이것은?

○**임미애 위원** 이것은 좀 깁니다. 이것은 조금 당겨서……

○**소위원장 이원택** 한 6개월 정도로 하지요.

○**임미애 위원** 예.

○**윤준병 위원** 뭐 준비할 게 있나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은 준비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6개월로 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6개월로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잠깐만, 의결하기 전에 하나만 주문하고요.

앞에 외국인근로자 구인하기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라 하는 내용을 뺏잖아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농촌 현장에 외국 인력이 물론 중요 내용이긴 하지만 내국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농협도 하긴 하지만 그게 실효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구조를 점검해서 자자체 중심으로 짜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거기에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국인들도 농번기 내에 최대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요, 중개센터라든지……

○윤준병 위원 그런데 실제 한다고 하는데 전혀 체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내용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25조의 1항의 1·2호하고 2항의 1호는 별칙조항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25조의 2항의 2호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별칙을 주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어렵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임미애 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현행에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직 없는데요. 앞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변경조항이 있었는데 그것 수용을 안 하면서 이게 빠진 겁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 지정 수용을 안 한다?

○임미애 위원 아까 근무처 변경을, 이게 아까 그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무처 변경 이쪽에서 개선 노력하는 것으로 정리는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10조의 9에 보면……

○임미애 위원 10조의 9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44페이지에 보시면, 별칙의 근거 규정이 된 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무처 변경에서 시행령으로 사업장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지침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별칙 규정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대신 아까 당부드린 대로 이게 농림부나 해수부에서 직접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빠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자료 보시면 25페이지에 아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업무 지원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가능한데 교육은 이미 법안으로 성립돼 있어서 교육은 삭제하고 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리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러니까 3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라고 하는 것을 농어업고용 인력으로 맞춰야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농어업고용인력.

○임미애 위원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 ○출석 위원(8인)

강명구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정희용

### ○출장 위원(1인)

이만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은영